

현장실습 운영규정

제정 2000.06.09.
 개정 2002.04.09.
 개정 2008.06.09.
 개정 2009.03.01.
 개정 2011.09.01.
 개정 2012.03.01.
 개정 2013.06.01.
 개정 2014.06.23.
 개정 2016.03.01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 25조 제 3항 및 시행세칙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현장실습”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“현장실습기관”(이하 “실습기관”이라 한다)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·외 기관을 말한다.

③ “산학협력”이란 제 2조 ①항 및 ②항에 따른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인적, 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.

④ “현장실습생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.

⑤ “현장실습지원센터”(이하 “지원센터”이라 한다)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
⑥ “현장실습지원비”(이하 “실습지원비”라 한다)란 실습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각 스쿨은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계획된 각 스쿨은 소정

기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은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(산업체)에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1일 8시간 미만이거나 1주 3~4일 등의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 형태는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다.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
④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에 따라 “학기제 현장실습(1학기, 2학기 현장실습)”과 “계절제 현장실습(하계, 동계학기 현장실습)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. “학기제 현장실습”은 단기현장실습(4주 160시간)과 장기현장실습(15주 600시간)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“계절제 현장실습”은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한다.

제4조(운영체계)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, 스쿨 소속교수는 스쿨원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실무를 담당한다.

②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생생활 상담, 취업진로 상담, 면접클리닉 등과 관련된 업무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 2장 현장실습기관

제5조(현장실습기관 선정조건) ① 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중소기업 기본법,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
2.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3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
4. 위 각호에 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

② 제5조 ①항의 각 호에 준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현장실습협약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

③ 실습기관별 실습가능 학생 수는 선정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로 하되, 상시고용 인원이 5인 이내인 산업체인 경우 학생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. 단,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교기업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따른다.

④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스쿨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실습기관으로 추천된 실습기관의 장에게 현장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.

⑤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전공의 NCS 직무 혹은 스쿨별 ‘교육과정 개발위원회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직무의 역량을 실습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.

제6조(현장실습 운영조건)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.

1. 실습기관 정보
2.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
3. 현장실습 대상 전공, 인원 및 학년④

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 학생 교육, 지도 및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
2.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
3.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
4. 현장실습 학생 지도, 출석, 평가 관리

③ 계절제 현장실습,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에 참여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, 학교경영자영업 대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·대비될 수 있어야 한다. 산재보험·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 단 현장실습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스쿨원장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④ 학기제 장기현장실습(15주 600시간)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재보험·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,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실습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⑤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, 지급규모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7조(현장실습기관 변경) ①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, 스쿨원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기관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.

제 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

제8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총장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산업체 선정, 현장실습계획 심의, 현장실습 실시, 신청학점 검토, 현장실습 점수평가 등의 제반사항을 심의, 의결할 수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③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, 현장실습 평가서,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종합평가를 실시하고, 현장실습 종합평가 결과를 각 스쿨에 공개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업무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각 스쿨원장이 추천한다.

- 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취업지도위원의 구성인원으로 한다.
- 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장 학생 현장실습

제9조(현장실습 개설시기) ① 제 3조 ④항의 “학기제 현장실습”은 각 스쿨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 3조 ④항의 “계절제 현장실습”은 학생의 최종학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복학생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스쿨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설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스쿨원장은 시간외 및 공휴일에 현장실습이 실시된 경우, 그 일수를 실습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현장실습 현황보고)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시행계획서를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 각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완료 후 2주 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현장실습 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스쿨별 현장실습 실시결과 및 특이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현장실습 경비) ①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통비, 숙식비, 실습비, 현장지도자 임금 등으로 구분하고, 교통비 및 숙식비는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, 총장의 승인에 따라 실습비 및 현장실습 지도자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계획에 의하여 산업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, 그 지원금으로 실습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.

제12조(현장실습 사전교육)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.

1.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
2. 스쿨별 현장실습 프로그램
3.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산정
4.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서류
5.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

② 현장실습 대상자가 결정되면 스쿨에서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(3시간 이상)을 실시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 사전교육 후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
2. 성희롱 예방교육
3. 인성 및 어학교육
4.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스쿨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

제13조(학생 의무사항) ① 현장실습지에 파견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취득한 산업체 또는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산업체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현장실습 기간 중 질병,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현장실습의 무효) 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였을 경우,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.

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,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.

③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은 학칙에 준용하여 현장실습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.

제15조(현장실습의 유보)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유보할 수 있다.

1. 질병
2. 관혼상제
3. 폐업
4. 천재지변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6조(현장실습 순회지도)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순회지도교수를 정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주기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현장실습일지 작성) ①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, 현장실습 지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5장 현장실습 학점 및 성적평가

제18조(현장실습 취득학점) ①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은 15주(600시간)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소 15학점에서 최대 24학점으로 한다.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에 한하여 부여하되, 실습교과 외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된다.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.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이수 최소 학점은 원장의 권한으로

결정한다.

② 계절제 현장실습,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2학점으로 하며,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.

③ 현장실습의 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에 스쿨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준하며, 복학생 및 유급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의 학점에 준한다.

제19조(현장실습 성적평가) ① 현장실습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.

②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NCS의 직무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, 현장실습 지도자 50%, 지도교수 평가 50% 기준으로 평가하며, 60점 이상을 Pass로 판정한다.

③ 스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, 해당 스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20조(기타) ① 이외에 현장실습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기제 장기현장실습(실습학기제 현장실습)세부기준에 따른다.

제 6장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⑥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⑦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⑧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⑨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